

〈특집 : 근세 동아시아 세계 물품의 교역과 글로벌리티〉

淸 勅使 · 通官에의 조선 호피 · 표피 사여와 무역*

서인범**

〈목차〉

- I. 머리말
- II. 후금 사신에의 禮單 지급
- III. 淸 勅使에의 禮單 지급
- IV. 청조 通官에의 호피 · 표피 지급 및 求請
- V. 청 종실 · 칙사 · 통관의 무역 요구
- VI.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은 후금 조정에 公禮單을 바치는 외에도 胡差(혹은 金差)에게 별도의 私禮單을 지급하였다. 일찍이 명나라 사신에게도 별도의 예단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후금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예단을 강제하였던 것이다.

청조 성립 이후 勅使 편성은 정사·부사 각 1명, 通官 수 명, 提督 등으로 구성되었다.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북경으로 되돌아가는 날까지 수차례의 宴會가 베풀어졌고 그 때마다 조선은 그들에게 예단을 지급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특히 호피보다는 표피가 예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청조가 성립한 이듬해 정사·부사에게 각각 호피 6장, 표피 29장이 지급되었으나, 태종 홍타이지가 죽고 順治帝가 등극하자 호피 1장, 표피 14장이 경감되었다. 황제의 등극을 자축하는 동시에 조선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선정을 베푸는 의식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도 칙사 2명에게 표피 각 1장씩, 칙사 이하 都給禮單으로 정사·부사 각각 10장씩이 지급되었으나, 건륭제가 등극하자 각각 5장씩으로 줄어들었다.

강희제의 조선이 바치는 歲幣 품목 중 紅豹皮의 全免, 건륭제의 칙사에게 공예단으로 지급하는 표피의 半減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한편에서 통관들은 都求請·別求請 명목으로 다량의 표피를 확보하였다.

통관들을 위시해 칙사·提督, 瀋陽의 황실과 八旗들도 표피 무역에 뛰어들었다. 진상과 예단용 표피가 감소하자 그 부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강제성을 띤 무역이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조선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칙사나 통관이 요구하는 물품이 끝이 없어 이들이 거쳐 간 州·郡은 피폐할 정도였다.

□ 주제어

청(淸), 호피(虎皮), 표피(豹皮), 칙사(勅使), 통관(通官)

I. 머리말

후금 시기는 물론 청조가 성립되어 조선과의 사이에 정식으로 조공책봉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도 조선의 호피·표피는 매년 歲幣 혹은 貢物, 나아가 그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무역품 중의 하나였다. 잘 알다시피 청조는

冠服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한 신분 질서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 신분 고하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품목의 하나가 호피·표피로 만든坐褥(방석 혹은 깔개)과冠(모자)이었다. 청조에서 貴賤의 구별은 보석 혹은 산호나, 수정·玉石·금속 등으로 제작한 禮帽의 장식품인 頂子和 방석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 태종 흥타이지가 관복 규정을 제정한 이후, 雍正帝는 좌욕의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八旗大臣·統領衙門 및 都察院으로 하여금 엄히 稽察하도록 엄명하였다. 만약 大臣 등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소홀히 처리하면 같은 죄로 처벌하였다.¹⁾ 이처럼 청조에 있어 호피·표피는 신분의 위엄과 등급을 구분하는 주요한 물품이었던 것이다.

조선은 의례적으로 청 황제와 황태자에게만 호피·표피를 진헌하였으나, 청조의 정치가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세폐 감면 조치가 점진적으로 취해졌다. 한편 조선에 파견된 청 勅使나 通官- 특히 조선 출신 통관- 들도 조선으로부터 이들 물품을 사여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호피·표피의 무역을 조선에 강제하였다.

전해종은 후금시기 조선의 사신 파견은 연 평균 7.26회였으나, 청 성립 이후부터 강희제가 등극하는 해까지는 대략 4.23회로 줄어들었고, 조선과 청조 사이의 관계가 안정화되는 18세기 이후는 연 2~3회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서술하였다.²⁾ 반면 최근에 김경록은 청조의 조선 出使는 崇德 원년(1636)부터 光緒 6년(1880)까지의 245년 동안 169회였다고 분석하였다.³⁾ 년 0.7회 정도인 셈이다. 한편 구범진은 順治연간(1644~1661)의 18년 동안

1) 호피·표피는 좌욕 외에 갓옷, 그리고 황제들이 종실을 우대할 때, 인접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혹은 공을 세운 대신들에 하사할 때 이용되었다. 서인범, 「조선 호피·표피의 淸朝 진헌」, 『역사학보』 244, 2019.

2) 전해종,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3)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30, 2004.

에 청조는 칙사를 39회나, 康熙연간(1662~1722)의 초기 20년 동안에 26회나 파견하여, 그 빈도가 연평균 1회를 넘어섰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칙사 파견의 빈도가 점차 낮아져, 乾隆연간(1736~1795)의 60년 동안은 18회에 그쳤으며,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도 지속되었다고 논술했다. 그는 청조가 조선에 파견한 칙사 중에 한인관료를 배제하였다는 흥미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즉, 入關 이후 光緒연간(1875~1908)까지 청조가 조선에 파견한 사신은 모두 150회(연인원 340명)였고, 乾隆 중기에는 3품 이상의 고급 관원을 조선에 책봉사로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旗人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해냈다.⁴⁾

최근 이명제는 승덕 2년(1637)부터 광서 7년(1881)까지 청조에 들어간 사신을 使行과 齎咨行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청조의 조직 반포와 그 성격, 승덕~강의연간의 청 사신 명단과 관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⁵⁾

본고는 청 칙사·통관들에게 公禮單·私禮單의 명목 혹은 그들이 강력히 요구한 품목인 호피·표피를 시야에 두고 논지를 전개한다. 승덕 8년(1643. 인조 21)⁶⁾부터 건륭 51년(1755. 영조 31)까지 청 칙사를 포함한 사신들에게 지급한 예단 및 구청 물품을 기록한 『頒敕勅遠接使別人情』(奎 1312-v.1-8) 사료와 인조 15년(1637)부터 순조 31년(1831)까지 152회에 걸쳐 조선에 파견된 청 使臣의 名單과 編者가 純祖 33년·35년을 추가한 사료인 『接勅考』⁷⁾를 중점적으로 이용하여 후금 및 청조 성립 이후 칙사와 통

4) 19세기의 칙사 파견 사유는 두 나라 군주의 중대한 '慶弔辭'로 제한되었다. 구범진, 「淸의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인문논총』 59, 2008. 그는 병자호란의 원인을 흥타이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자 '稱帝' 문제를 조선과의 외교문제로 비화시킨 것에서 찾았다.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5) 이명제, 『17세기 청·조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1. 2.

6) 편의상 청 연호를 먼저 표기하였다.

7) 필사본으로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고 완성 단계에서 이명제 박사로부터 통관 관련 기록이 풍부한 『접칙고』 사료를 소개받았

관에의 호피 · 표피 사여, 그들의 무역 요구 행태를 밝혀 朝 · 淸 관계의 일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후금 사신에의 禮單 지급

조선은 후금에 공식적으로 예단을 바치는 외에도 胡差(혹은 金差)⁸⁾에 게 별도의 예단을 지급하였다. 후금은 명 사신에게 별도의 예단을 지급한 사례를 들어 예단을 요구해 왔다.⁹⁾ 청조 성립 이후는 명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조선에 贈遺와 칙령을 반포하였다. 흥타이지는 조선의 공물이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질책하였다. 조선인 쇄환, 양국 인민 등이 월경하여 수렵하는 범법 행위 등의 현안¹⁰⁾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조선이 후금과의 맹세를 어긴다고 의심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천총 2년(1628. 인조 6) 回答使 鄭文翼이 후금으로 들어갈 때 原禮單 이외에 청포 1,000필, 표피 5장 등 다양한 품목을 별단 명목으로 마련해 갔다.¹¹⁾ 이듬해 2월 金差 滿月 乙介(혹은 滿月 乙介 · 만다르한¹²⁾) · 阿之好(아주후), 그리고 조선 鍾城 토착민 출신인 朴仲男(董納密 · 중남이) 등이 흥타이지의 친서를 받들고 한양으로 들어왔다.¹³⁾ 일찍이 흥타이지는 朴仲男 · 高化逢 · 高倍 등이 후금과 조

다.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겠다.

8) 호차와 금차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듯하다. 『인조실록』 인조 7년 2월 계축조에 는 '胡差'로, 『승정원일기』 같은 날에는 '金差'로 표기하였다.

9) 광해군 원년 칙사에게 은 수백 냥과 把蔘 30근, 綿紬 · 苧布 약간을 더 보냈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7권, 광해 1년 6월 4일(계축).

10) 『淸太宗實錄』 권4, 天聰 2년 5월 25일.

11) 『인조실록』 권24, 인조 9년 6월 24일(丙寅).

12) ()의 성명 표기는 만주어 독음이다.

선을 왕래한 공로가 있다며 이들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접견할 시에는 交椅에 앉지 못하더라도 특별히 붉은 담요를 깔아줄 것, 물품 증정도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¹⁴⁾ 조선은 이전 박중남에게 토산물 등의 잡물과 은 50냥을 별도로 증급한 적이 있었고, 句管堂上은 段子·花紬, 銀 30냥을 건네기도 하였다.¹⁵⁾ 이때 박중남의 대우 문제가 재론되자, 조선은 그에게 별도로 예단을 증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조는 이들이 요구하는 표피 10여 장, 水獺皮와 紫黍皮 각각 20장 등을 긴급히 마련하였다.¹⁶⁾ 금차는 은 1,000여 냥으로 여러 종류의 단자·靑布·紙束, 표피 등의 皮物을 구매하고자 하였다.¹⁷⁾ 그들이 요구하는 물품 중 刀劍·弓角은 금지시키고, 그 대신 호조가 보관하고 있던 각종 단자·靑布¹⁸⁾·피물·紙束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들이 開市에서 얻으려는 물품은 표피를 위시해 각종 채색, 5색 眞絲·明貝纒子·양피·수달피·청서피·乾柿子·生梨·丹木·백반·胡椒 등이었다. 조선은 그들이 원하는 무역 물품을 일일이 기록하여 平市署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상인들은 미처 이들 물품을 갖추지 못하였다.¹⁹⁾

천충 6년(1632. 인조 10) 호차 所道里(즉 바두리, 巴都禮)는 명 사신을

13)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14일(경자) 및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2월 23일(기유);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1일(정미). “且從胡中一等八名, 通事一名外, 率胡二十九名, 我國假胡五名”이다.

14)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1월 1일(계해).

15) 당시 용골대에게 황금 5냥을 지급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7일(계축).

16)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3일(기유).

17)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7일(계축).

18) 명·청 교체기에는 금차만이 아니라 靑布를 접거하고 있던 毛文龍의 差使들도 조선에 銀을 요구하는 형국이었다. 반면에 후금은 靑布를 요구하였고, 조선으로부터 받은 은으로 靑布를 무역해 갔다. 은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호조는 금차에게 각각 전례대로 별도로 증급하는 은 대신에 그 가치에 해당하는 청포·段子를 지급하였다.

19)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7일(계축).

접대하는 사례로 자신들을 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明使와 똑같이 평안감사·평안병사·黃海兵使·開城留守 등 네 명의 大官들이 성을 나와 영접하라는 것이었다.²⁰⁾ 일찍이 후금은 8개 站에서 연회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단지 세 곳에서만 응하였다. 이에 흥타이지는 안주·평양·황주·개성부 등 네 곳에서 연회를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²¹⁾ 조선은 후금의 大官이 사신으로 나오는 경우는 연회를 열었지만, 평상시에 내왕하는 差使는 응하지 않았었다.²²⁾ 후금은 조선이 명조는 부모로서 대우하여 대소 관원들이 말에서 내려 明使를 영접하는 데 반해, 자신들은 형제의 나라로 취급하여 말 위에서 서로 읊하는 형태로 그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후금이 재차 差使가 왕래할 때 1路의 4大官, 즉 평안감사·평안병사·황해병사·개성유수가 영접할 것을 요구하자²³⁾, 평안도는 평안 관찰사가, 황해도는 황주 병사가, 경기도는 개성부 유수가 접대하도록 조치하였다.²⁴⁾

천총 8년(1634. 인조 12) 말에 금차 馬夫大(즉, 馬福塔 혹은 마푸타) 등이 從胡 113명을 거느리고 한양에 들어왔다. 이들은 조선에서 正복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전례대로라면 別設宴·別盤饌·別禮單을 거행해야 했다.²⁵⁾ 금차 2인의 예단을 용골대(龍骨大·英俄兒代·잉골다이)와 朴只乃 등에게 지급한 사례대로 마련하였다. 즉, 1등 42인은 八將(즉, 팔기)이 보낸 호차의 사례를, 從胡 60명은 중호의 예로 마련하여 증급하였다.²⁶⁾ 旬管所에서

20) 『인조실록』 권27, 인조 10년 9월 27일(임술).

21) 『승정원일기』 인조 11년 10월 4일(계해).

22)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10월 4일(계해).

23) 『인조실록』 권27, 인조 10년 9월 27일(임술).

24) 『인조실록』 권27, 인조 10년 11월 19일(계축).

25)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2월 28일(경술) 및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12월 28일(경술).

26)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2월 29일(신해).

상마연을 설행하였는데, 조선출신 胡譯 김돌시·鄭命壽(谷兒馬紅)²⁷⁾ 등은 別禮單 중에 표피 1령 등의 물품이 빠졌다며 불평을 토로하였다. 더군다나 그들은 별예단 외에 別贈給을 요구하자, 구관소는 이전 騰錄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대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그들을 달랬다.²⁸⁾ 이어 별예단 지급 문제를 이후 선례로 삼지 않는 약정을 맺으려고 하였다.²⁹⁾

이듬해 5월 금차 馬夫達(마부타)이 商胡 160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물품을 독촉하였다.³⁰⁾ 마부달은 용골대와 더불어 흥타이지가 조선에 관련된 일들은 말길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조선은 이들이 요구한 물품 중 호피·표피를 여러 곳에서 널리 구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다. 저자에 비축한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호피 16장, 표피 27장, 수달피 30장을 매매할 수 있었다.³¹⁾ 조선은 호피·표피 획득이 어려워지자 외방에 지정하는 물품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호피 58장은 40장으로, 표피 136장은 100장으로 경감시켰다.³²⁾ 그로 인해 후금이 원하는 표피는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연회에 사용하는 표피를 호피로 대체하였을 정도였다.³³⁾

27) 정명수 관련 논문은 김선민, 「조선통사 굴마훈, 淸譯 鄭命壽」, 『명청사연구』 41, 2014 및 白玉敬, 「仁祖朝 淸의 譯官 鄭命壽」, 『研究論叢』 2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참조.

28)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월 7일(무오).

29)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월 9일(경신). 『비변사등록』 인조 25년 10월 10일. 「칙사 정명수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주는 銀子 이외의 수고비에 대한 備邊司의 啓」. 정명수에게 향상은 700냥을 건넸다.

30)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5월 2일(신해).

31)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1월 19일(을축).

32)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8월 6일(정축).

33)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3일(정해).

III. 淸 勅使에의 禮單 지급

1. 예단 지급 규정

그렇다면 청조 성립 이후 조선에 들어온 칙사에게 예단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호피 · 표피를 지급하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청조의 사신은 순치연간까지는 상사 · 부사의 2명 외에 三使 · 四使 · 五使³⁴⁾ 등 2명~5명을 파견하였다. 후기 시기나 청조 성립 초기는 사신 구성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순치 16년(1662. 현종 2) 황제는 顯宗을 책봉하는 칙사를 조선에 파견하였고, 같은 해에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 滿洲 內閣學士, 翰林院掌院學士, 禮部侍郎” 중에서 정사와 부사를 한 명씩 고른다는 인선 원칙을 세웠다. 內大臣(중1품), 散秩大臣(중2품), 一等侍衛(정3품) 등은 侍衛處 소속의 八旗 武職이다.³⁵⁾

조선은 이들 칙사에게는 地銀(즉, 九成銀)³⁶⁾ · 종이 · 부채 · 환악 · 皮物 · 명주 · 담뱃대 등을 贈給하였다. 당시 應辦色은 예단 求請을, 分工曹는 例給할 皮物을 맡았다.³⁷⁾ 조선은 칙사의 迎慰宴 · 餞慰宴 및 한양에서 베푸

34) 순치 7년 「攝政王通婚勅」을 포함한 2개의 칙서를 전달할 때 5명의 사신이 편성되었다. 『동문휘고』 권9, 「조칙록」 정월 28일.

35) 구범진, 앞의 논문, p.5.

36) 平安監營(朝鮮) 編, 『平安道內各邑支勅定例』(奎17197) 「贈贖」에 의하면 상칙 · 부칙은 丁銀(즉, 七成銀)을, 一大通官에는 正銀 · 天銀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조 1년(1788)에 간행한 黃海監營(朝鮮) 編, 『海西支勅定例』(奎16041) 「排設」도 호피 · 표피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海西에서는 상칙 · 부칙의 樓抹 · 遞馬所에도 표피 방석 1립 혹은 호피 방석 1립을 설치하였다.

37) 대통관 이하의 물품 지급은 館伴 · 都廳 · 郎廳이 담당하였다(『만기요람』 재용편 5, 支勅 「延接都監分掌」 및 「贈給式」).

는 연회 때 예단을 지급하였다. 본래 宴享 규정은 칙사가 外方에 있을 때 7 차례, 서울로 들어온 후에 7차례 베풀었다.³⁸⁾ 『만기요람』에 의하면, 問安使 파견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실려 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칙사를 5곳에서 영접하였다. 즉, 의주·정주·안주·평양·황주에 兩西의 수령을 선발하여 迎慰使 자격으로, 安州問安中使 그리고 평양·황주·송도 3곳의 문안사는 승지나 혹은 道内の 수령 중에서 승지를 지낸 사람을 파견하였다. 弘濟院別問安使는 대신 1인·승지 1인을, 館所問安使는 宰臣이나 혹은 別軍職으로 하여금 入京日로부터 回還日에 이르기까지 매일 한 차례 문안시켰다. 翫日問安中使도 편성하였으며, 칙사를 전송할 때는 송도·평양·의주에 승지를 지낸 도내의 수령을 선발하여 파견하였고, 안주에는 問安中使를 보냈다. 칙사를 영접할 때의 5차 영위사의 御帖名帖은 遠接使가, 칙사를 보낼 때에 3차 문안사의 어첩명첩은 伴送使가 전달하였다.³⁹⁾

칙사 외에 差官의 경우는 약간 달랐다. 승덕 4년(1639. 인조 17) 9월 흥타이지는 滿月介(滿達爾漢·만다르한)를 파견하여 인조의 질병을 위문하였다.⁴⁰⁾ 조칙을 반포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본래 칙사의 경우는 7차례 迎慰使를 보내 맞이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반면에 일반 차관의 경우는 단지 접반사만 보내고 영위사와 餞慰使는 차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월개는 滿洲正黃旗 출신으로 관위가 높았던 탓에 예조는 전례를 깨고 후하게 접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변사도 奉使 의미가 남다르다며 그를 칙사와 똑같이 후하게 접대할 것을 건의하였다. 논의 끝에 승지 具鳳瑞를 接伴使로 칭하고 종2품으로 假銜하여 예단을 지참시켜 출발시키려

38)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27일(신사). 7처는 碧蹄·開城府·黃州·平壤·安州·定州·義州이다. 『칙사등록』 「勅使節目」 己卯 2월 7일.

39) 『만기요람』 재용편 5, 支勅 「問安使次數」.

40)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9월 21일(을해). 이때 滿月介는 弔祭의 일로 조선에 들어왔다. 『인조실록』 권27, 인조 10년 9월 27일(임술).

하였으나, 章服이 갖추어지지 않아 원접사 鄭太和로 교체시켰다. 郊外 迎餞慰使 및 館에 도착 이후의 상마연·하마연의 宰臣은 該曹가 미리 차출하고 예단도 우대하여 마련해 놓았다. 다만 7처의 迎餞慰는 모두 행할 수 없어 義州·平壤·開城府 등으로 제한하였다.⁴¹⁾ 吏曹는 迎餞慰使를 차출하여 관례대로 예단을 가지고 가도록 준비하였으나, 문제는 이들이 칙사가 아닌 差官의 명칭을 띄었기에 대우에 약간의 차별을 두어야 했다. 결국 의주는 제외되고 평양·개성에서 영위사가 접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⁴²⁾ 결국 宴禮와 별예단은 칙사의 예로 거행하였고, 예단으로 표피 5장을 지급하였다.⁴³⁾ 만월개 영접 예단과 전별예단은 鹿皮였고, 한양에 들어온 뒤로는 칙사의 예에 따라 표피를 썼다.⁴⁴⁾ 請宴 禮單과 別禮單을 尙方·호조·弓房 등에서 준비하였다.⁴⁵⁾ 상방에서 紬·은장도·燭·鳴籥 그리고 표피 등을, 호조에서 저포와 환도·종이를, 궁방에서 활과 화살을 마련하였다.⁴⁶⁾ 하지만 그는 선물을 折價하여 은으로 받아갔다.⁴⁷⁾

이듬해인 승덕 5년(1640. 인조 18) 소현세자를 護行한 예부시랑 梧木道(俄莫克圖·梧木都·오목투)⁴⁸⁾는 滿月介에 비해 迎餞·迎慰宴 횡수를 줄여, 의주·평양·황주·개성부 등 4곳에서만 설행하였다. 벽제 등지에서 迎慰

41) 滿長, 즉 만월개의 행차가 의주를 지나쳤기에 평양부·개성부 두 곳과 증도에 문안관으로 대신 1명을 별도로 파견하였고, 승지는 벽제에 나가 영접하였다. 또한 대신 1명이 교외에서 영접했고, 宴禮는 한결같이 칙사와 같이 대우했다. 『비변사등록』 인조 19년 10월 19일.

42) 『勅使臚錄』 「接待使定奪」 己卯 9월 22일 및 「滿將出來時迎餞慰使定奪」.

43)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23일(정축)

44)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29일(계미).

45)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27일(신사).

46)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24일(무인).

47)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29일(계미).

48) 『접칙고』 「昭顯世子護行將接待都監」 승덕 5년 경진 4월. 예부시랑으로 표기하였다.

宴과 饑慰宴을, 중도에 問安承旨의 문안, 교외에서 영위연과 전위연을, 한양에 들어온 뒤 상마연과 하마연·익일연을 베풀었다. 관소에 머물고 있을 때 승지의 문안, 벽제관과 慕華館에 대신이 나가서 안부를 물었다. 각종 연회는 심양의 지시에 따라 중지하였다.⁴⁹⁾ 예단의 품목과 수량도 滿月介보다는 낮추고 差官에 비해서는 조금 후하게 마련하였다.⁵⁰⁾

【표 1】은 칙사가 조선에 들어오는 날부터 귀국하는 날까지의 연회와 각종 명목의 예단 지급에 관련된 규정이다.

【표 1】 칙사에 대한 宴享 및 예단 지급 규정

분류	원점사	安州	영은문	入京 익일	2일	3일	4일	5일	回程 臨時	回程日	節日	回還	中路禮單 (回還安州)	기타
宴會				下馬宴	翌日宴	仁政殿 講宴	回禮宴	別宴	上馬宴	饑宴				
예단종류	中路 禮單	中路問安 使禮單	例贈	例贈 別贈		都給·都求 請·密贐					節日禮單	回禮單	中路回禮單 (中使禮單)	別求請 別別求請

※ 전자: 『만기요람』 재용편 5, 支勤 「贈給式」 및 「宴享式」

入京 다음날의 下馬宴을 시작으로 回程日의 饑宴까지 다양한 연회가 베풀어졌다. 아울러 원점사가 중로문안이라는 명목으로, 연회가 베풀어질 때마다 例贈·別贈·都給·都求請·密贐 등의 명목으로 예단을 지급하였다. 예증은 中使가 尙衣院의 物種과 호조의 贈給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密贐은 명칭 그대로 비밀리에 지급하는 물품으로, 승덕 2년(1637. 인조 15)부터 시작되었으며, 嘉慶 6년(1801. 순조 원년)에 驢行이라 개칭되었다. 正朝·단오·동지의 節日에도 예단이 있었다. 건륭 49년(1784. 정조 8)에는 특별 조치로 回禮單이, 통관처에는 別給禮單이, 또 中路回禮單이 있었으나 후에 폐지되었다. 그 외에 칙사가 回還 시 安州에 도착하면 中使의 예단이,

49)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1일(계유).

50)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윤1월 14일(병신).

그 밖에 別求請 · 別別求請의 명색이 있었고, 칙사의 요청에 따라 증급하였기에 물품의 多寡와 有無는 해마다 동일하지 않았다.⁵¹⁾

칙사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문관지』 사대 하, 「禮單」조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그 규정을 통해 입경 시 中路에서의 문안, 회정 시의 문안, 節日에 증로에서 지급하는 問慰使의 예단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사·부사에게 別禮單으로 내관이 청서피·수달피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한편 『일성록』에도 건륭 49년(1784. 정조 8)에 호조가 칙사와 通官에게 예단을 지급한 사례가 보인다. 그 기록을 통해, 증로나 회정 시의 예단으로 상사·부사에게 각각 표피 1장, 都給禮單으로 각각 표피 5장, 회환할 때 증로문안사가 가지고 가는 예단으로 각각 표피 1장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호피·표피의 예단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표 2】로, 『頒赦勅遠接使別人情』의 승덕 8년(1643. 인조 21) 기록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각종 명목의 예단 지급 시의 호피·표피 수량

년도	遠接使禮去別人情	便殿接見禮單	下馬宴禮	翌日宴禮	南別宮請宴禮單	館伴禮單	上馬宴禮單	郊外餞宴禮單	別禮單
호피	1(각1?)					각1		각1	
표피		각1	각1	각1	각1	각1	각1		각1

【표 2】에 의하면, 승덕 8년에는 원접사의 別人情·館伴禮單과 郊外餞宴禮單으로 호피 1장(각1?)이, 便殿接見禮單·下馬宴禮·翌日宴禮·南別宮請

51) 하마연부터 인정전 청연은 왕이, 회례연부터 상마연까지는 宰臣이 주재하였다. 칙사가 나왔을 때 130여 종을 분정할 정도로 物目이 매우 많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5월 16일(병신).

52) 『일성록』 정조 8년 12월 9일(경인). 정조 23년 칙사 일행의 예단·예증·별증·도구청의 각항의 물종을 折銀하거나 本色으로 가지고 갔다. 도급 예단의 표피 1령은 銀 9냥으로 바꾸었다(『일성록』 정조 23년 3월 23일(신사)).

宴禮單·館伴禮單·上馬宴禮單·別禮單으로 각각 표피 1장씩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호피보다는 표피가 예단으로 더 많이 사용된 사실도 추론 가능하다.

【표 3】은 승덕 8년 이후 칙사 등에게 지급하는 호피·표피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頒赦勅遠接使別人情』에 보이는 칙사에게 지급한 표피 수량

	皇后頒詔勅						頒慶勅						頒詔兩					
	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勅使以下都給禮單		回還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별인경)1		勅使以下都給禮單		勅使回還時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勅使以下都給禮單		回還時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순치11			10	10										1				
강희1							1	1	10	10								
강희6													1	1	10	10		

첫째, 순치 11년(1654. 효종 5) ‘皇后頒詔勅’의 경우에는 원점사의 별인경 지급은 없었으나⁵³⁾, 강희 1년(1662. 현종 3) 이후 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勅使以下都給禮單·回還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명목으로 표피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해 칙사 2명에게 遠接使別人情으로 표피 각 1장, 勅使以下都給禮單으로 정사·부사 각 표피 10장씩을 지급하였다. 건륭제가 황제위에 오르자 증로문안사 예단 외에 회환 시 별문안중사의 예단 명목으로 칙사 2명에게 각각 표피 1장씩을 더 하사하였다.⁵⁴⁾

둘째, 칙사에게 지급된 호피·표피의 총 수량이다. 승덕 8년에는 칙사

53) 순치 10년 廢后 건으로 예부상서 覺羅郎球(교로 랑키오)를 파견하여 조선에 반포하였다. 『淸世祖實錄』 권78, 순치10년 9월 26일(무오). 순치 11년 6월 「繼立皇后詔」一道를 상사 阿思哈, 부사 內院學士 奚를 파견하여 반포하였다. 『동문회고』 권 9, 「詔勅錄」 및 「接勅考」에는 정사의 이름이 阿思哈尼哈番 額으로 표기하였다. 「勅使出來數」 「冊后勅」 순치 11년 甲午 9월.

54) 『頒赦勅遠接使別人情』 「皇帝登極勅」 옹정 13년.

1인당 표피 7장이, 순치 11년(1654. 효종 5)에 ‘皇后頒詔勅’을 받들고 조선에 들어온 칙사 2원에게 都給禮單으로 정사·부사에게 각각 표피 10장씩을 지급하였다. 강희 1년(1662. 현종 3) 이후는 정사·부사 모두 11장씩 지급되었다.

『통문관지』에도 칙사에게 지급한 예단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순차적으로 예단 수량은 경감되었다.

【표 4】 『통문관지』 事大 下, 「禮單」

구분	송덕 2(1637. 인조15)		송덕 8(1643. 인조21)		순치 5(1648. 인조 26)	
	상사	부사	상사	부사	상사	부사
호피	6	6	5	5	0	0
표피	29	29	15	15	10	10

※ 『동문회고』 『예단』조에서는 豹皮가 아니라 貂皮로, 하지만 「예단」조에서는 표피로 기록

청조가 성립된 이듬해 정사·부사에게 각각 호피 6장, 표피 29장이었던 것이, 순치제가 등극한 해에 호피 1장, 표피 14장이 각각 호피 5장, 표피 15장으로 경감되었다. 당시 순치제가 인조에게 칙서로 유시한 내용이 『同文彙考』別編 권2, 鑄弊 【癸未】 裁減勅使餽遺及儀物勅 戶部承政陳等來에 보인다.

짐이 듣기로 파견한 사신이 모두 명조의 舊例를 들어 얻은 예물이 너무 많아 백성이 매우 견디기 어려우니, 이는 선정이 아니다. 이에 특별히 그 숫자를 줄여 定例로 삼는다. 재차 예물을 연도의 驛遞에서 보내니 매우 불편하다. 이후는 王京에서 주도록 하며 연로의 대소 역참에서 접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 및 房妓·鷹犬은 모두 혁파하라. 迎送·宴接 의례는 전례대로 하라…… 사신이 조선에 도착하면 식용 물품은 참작하여 줄인다. 특별히 유시한다. 하나. 정

사·부사 각 사신 1인 당 본래 鞍馬 2필이었으나 지금은 1필로 하는 것을 정례로 한다……원래 표피 29장이던 것을 지금은 15장으로 하는 것을 정례로 한다. 원래 호피 6장이었던 것을 지금은 5장으로 하는 것을 정례로 한다. …… 승덕 8년 5월 11일

순치제가 칙사에게 지급한 호피·호피의 감면 조치 이유가 실려 있다. 즉, 순치제가 조선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주는 동시에 선정을 베푼다는 의식의 발로였다는 것이다. 정사와 부사 각각 표피 29장을 15장으로, 호피 6장은 5장으로 경감되었고, 지급처도 연도의 역참이 아니라 북경으로 변경되었다.⁵⁵⁾

이어 순치 5년(1648. 인조 26)에 재차 경감 조치가 취해졌다. 순치제는 정사로 內翰林國史院學士 額色黑, 부사로 시위 哈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칙사들에게 지급해주는 예물을 감면시켰다.⁵⁶⁾ 그 구체적인 내용이 『淸世祖實錄』 권36, 순치 5년 정월 12일(戊申)조에 나와 있다.

正使는 은 500냥, 棉紬 200필, 布 200필, 苧布 60필, 표피 10장, 大紙 50卷 ……이 외는 모두 정지한다. 副使는 은 400냥, 그 밖은 정사와 같다……이상 각 조항은 모두 영원히 정례로 한다.

표피는 15장에서 10장으로, 호피는 전액 감면되었다.⁵⁷⁾ 순치제가 이러

55) 『동문회고』 기록에는 초피로 되어있으나 『심양장계』 계미년(1643) 「勦草謄書」 및 『칙사등록』 승덕 8년 5월 기록에도 표피로 되어있다. 이는 표피의 오기이다.

56) 『통문관지』 사대 하, 「칙사의 행차」. 額色黑은 만주 鑲白旗, 哈은 上三旗출신이었다. 이명제, 박사학위논문, 32쪽 참조.

57) 인조 24년(1646) 칙사 3인은 각각 은 1,000냥, 1등 두목 10인은 각각 은 200냥, 2등 두목은 각각 은 100냥, 3등 두목은 각각 은 70냥을 지급하였다. 이 외에 호피·표피도 지급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1월 10일(무오).

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복건의 隆武帝와 광동의 紹武帝를 사로잡아 南明 政權을 붕괴시켰고, 아울러 코르친[科爾沁]·카라친[喀喇沁] 등의 많은 부족과 喇嘛 班第達 등이 來貢해와 자신감을 가졌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순치제의 표피 경감 조치는 조선 출신 역관 정명수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호조는 사은사의 예단으로 호피·표피를 미리 마련하였다. 호조는 호피 24장 중에서 10장을 여러 道の 감영과 병영에 할당한 상태였다. 호조는 호피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칙서를 기다리자고 건의하였으나 인조는 즉시 이들 물품의 마련을 중지시켰다.⁵⁸⁾ 이 조치에 의해 일부 물품은 줄었지만 표피는 정사·부사 각각 10장씩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강희 원년(1662. 현종 3) 10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太皇太后·皇太后·皇太妃 존호를 정한 조서를 받들고 정사 左都御史 覺羅雅와 副使 郎中 明이 통관 4명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왔다.⁵⁹⁾ 조선 출신 大通官 李夢善은 이번 勅使의 임무는 관례적으로 나오는 사신과 비교할 수 없으며 常例로 지급하는 贈給禮單 외에 別禮單을 요구하였다.⁶⁰⁾ 이때 遠接使齋去別人情으로 中路問安中使齋去禮單으로 칙사 2원에게 표피 각 1장, 勅使以下都給 명목으로 표피 10장을 지급하였다.

옹정 13년(1735. 영조 11) 12월 조선이 칙사에게 귀송한 儀物은 구례에 비추어 반을 줄이는 조치를 영원히 기록하여 式으로 삼는다는 황제의 上諭가 반포되었다.⁶¹⁾ 사실 이 상유는 옹정제가 내린 아니라 건륭제이다. 옹정제는 이미 8월에 죽어 건륭제가 즉위하면서 조선이 청조를 받들고 職貢을 공경히 하고 있기에 국왕의 번잡스런 비용을 면해주겠다는 뜻을 내

58)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2월 6일(신미).

59) 『동문회고』 補編 권9, 詔勅錄 강희 1년 청에서 조선에 보낸 조칙 목록. 「尊號太皇太后皇太后皇太妃詔」 10월 4일.

60) 『승정원일기』 현종 3년 12월 10일(기유). 대통관 李夢先·金德之, 次通官 尹堅·申金の 4인이었다. 『접척고』 강희 원년 임인 12월.

61) 『동문회고』 原編 권39, 鑄弊2, 乙卯 「禮部知會裁減勅使餽物一半上諭咨」.

비치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었다.

【표 5】 칙사에게 지급한 호피·표피 수량

칙사																
皇帝登極勅											耐廟勅					
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勅使以下都給禮單		回還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回還時別問安中使禮單		勅使二員別求請		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勅使以下都給禮單		回還時中路問安中使齎去禮單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정사	부사
용경13	1	1	10	10	1	1	1	1	3	3						
건륭2											1	1	5	5	1	1

【표 5】의 건륭 2년(1737. 영조 13) ‘耐廟勅’의 사례에서, 도급예단이 표피 10장에서 5장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정사·부사 각각 표피 5장씩의 하사는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頒敕遠接使別人情』에서 표피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이 건륭 51년(1786. 정조 10)의 ‘吊勅’인데, 여기에도 명확히 5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표피 사여 대상은 칙사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강희 51년(1712. 숙종 38) 청조와 조선이 경계를 획정할 때 接伴使의 禮單으로 烏喇總管 一員에게 표피 3장, 二等侍衛·主事·佐領 각각 표피 1장, 總管에 표피 1장을, 問慰使와 咸鏡監司는 총관에게 각각 표피 1장을 선물한 사례도 보인다.⁶²⁾

62) 김지남, 『北征錄』 1712년 3월 23일. 접반사 박권이 김지남을 역관으로 추천하고 예물 목록을 작성함.

2. 조선의 고뇌

칙사를 접대할 때 각 연향의 예단과 방에 소요되는 표피는 자그마치 70~80여 장에 달했다.⁶³⁾ 승덕 8년의 규정이 제정되기 3년 전인 승덕 5년에 조선은 칙사를 접견할 경우의 예단은 일체의 수를, 동시에 각 연향의 예단 皮物을 줄였다. 호조는 郊外에서 행하는 迎慰宴에 호피를 없애고 鹿皮만 남기는 것은 창피스러울 것 같다며, 표피로 예단을 대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호피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⁶⁴⁾ 하지만 당시 구하기 어려운 물품은 표피였다. 예부시랑 오목도 행차 시에는 표피 수요를 반으로 줄였다.⁶⁵⁾ 인조는 다량의 표피 마련은 民力을 번거롭게 하는 일로 판단하고는 표피 수량을 삭감시키고, 부족한 수량은 호조가 구입 하라고 지시하였다. 표피가 매우 귀해 값이 폭등하여 두 배 내지 다섯 배의 값을 주고서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⁶⁶⁾

이듬해 흥타이지는 자신의 誕日에 조선이 歲貢으로 米 1만 包를 백성들에게서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9,000포를 경감한다는 조서를 반포하였다.⁶⁷⁾ 博氏(巴克什)가 조선에 들어오는데 그는 자신을 칙사로 자처하였고, 요구하는 물품은 이전의 두 배에 달했다. 皮毛 · 鑰鐵 등 요구하지 않는 물품이 없을 정도였다.⁶⁸⁾ 三使를 자처한 정명수는 예단을 황제에게 바칠 것

63)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5월 16일(병신) 및 인조 19년 10월 26일(무진). 상사의 경우 방 안에 녹피를 두른(縮鹿皮) 표피 방식 1立, 통관은 호피를, 방 밖에 표피 1立, 호피 1수을, 그 외에 교자에 표피 1령을, 통관처 임시 막사 등에 호피 방식 1장 등을 사용하였다. 『平安道內各邑支勅定例』 「上勅房內」.

64)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윤 1월 25일(정미). 칙사는 교외의 연회가 없고, 滿將은 7차례 迎慰가 있었다.

65)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5월 16일(병신).

66)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6월 27일(계축)

67) 『淸太宗實錄』 권53, 승덕 5년 11월 1일(戊寅朔).

68)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1월 6일(무인). 潛商 등의 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조

을 강요하였다. 접대소는 표피가 고갈되었다며 豹皮阿多介 2장은 다른 가죽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⁶⁹⁾ 이때 각 연향의 예단과 방의 배설에 소요되는 표피 70여 장이었으나, 호조에 남아 있는 수량은 30여 장에 불과하였다. 京商에게서 수합하려 해도 그들이 농간을 부려 값은 두 배로 올랐다. 호조는 각 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한편, 함정을 파서 획득한 표피 1,2장씩을 각 관아에 분정하지 않고 감영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⁷⁰⁾

이후에도 조선은 감영과 병영에 分定하여 진헌할 표피를 조달시켰다. 순치 3년(1646. 인조 24) 호조가 표피 30장을 구입해 놓은 상태였지만, 인조는 칙사의 별예단으로 전례에 따라 호피 18장, 표피 19장, 鹿皮 180장, 水獺皮 100슴을 하삼도·강원도·함경도의 감영과 병영에 분정하였다.⁷¹⁾ 효종이 즉위하자 칙사가 파견되어 왔는데 이때 표피 40령이 필요하였다. 호조가 10령을, 그 외 30령은 下三道 및 강원도·함경도 감영·병영에 분정시켰다. 효종은 호조의 10령 분을 丙下하겠다는 뜻을 밝혔다.⁷²⁾ 이듬해에도 내탕고에서 호조에 皮物을 보냈지만 그 수량은 적었다. 경상 병영에서 올린 호피·표피로 客使의 수요에 보충하였다.⁷³⁾ 칙사가 피물 무역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효종은 최근 들어서 모피의 산출이 거의 끊어진데다 연이은 흉년으로 부응할 수 없다는 상황을 토로하였다.⁷⁴⁾ 강희 27년

실록』 권42, 인조 19년 10월 24일(병인).

69)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1월 6일(무인). 아다개 외에도 黑獺皮·白魚皮 등 잡물을 지급하였다.

70)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0월 26일(무진).

71) 『승정원일기』 인조 24년 12월 12일(갑신).

72)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7월 8일(을축). 가을에 10슴은 궁궐에서 지급하게 되었다.

73) 『효종실록』 권4, 효종 1년 5월 4일(병진).

74) 『비변사등록』 효종 3년 6월 14일.

(1688. 숙종 14) 순치제의 모친인 태황태후, 즉 孝莊文皇后의 부음을 전하는 칙사에게 지급하는 예단은 표피 20령, 수달피 60령이었다.⁷⁵⁾ 당시 호서와 호남은 흉년이라 內弓房에 바치는 호피는 2장, 표피는 46장을 흉년이라 임시로 감하였고 그 가격을 선혜청에 상납하는 상황이었다.⁷⁶⁾

이처럼 표피 마련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 하에서 칙사나 頭目的 예단은 은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승덕 2년(1637. 인조 15) 용골대 · 마부달 · 戴雲(達雲)의 3명의 칙사는 인조를 국왕으로 봉하고 印璽 · 誥命과 貂皮 · 狐皮 · 鞍馬를 하사한다는 칙서를 받들고 한양으로 들어왔다. 당시 칙사의 예단인 인삼 · 綿紬, 두목에게 각 연회에서 지급한 면주 · 白木 · 南草 등의 물품을 절은하였다. 한양에 들어온 후 6번의 연회에 지급할 人蔘價는 총 360냥이었고, 7곳에서 영위할 때의 人蔘價는 한양에서 지급하였다. 이 당시 사용한 은은 12,050여 냥에 이르렀다.⁷⁷⁾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헌세자가 죽었을 때 청조 弔祭使에게 지급한 은이 자그마치 2만 1,440여 냥에 달했다.⁷⁸⁾ 關西의 勅需는 한 번 지급하는데 1만여 냥이, 적어도 7,000냥~8,000냥이나 들었다.⁷⁹⁾ 순치 13년 2월 ‘出送義順公主’ 칙서와 ‘查審原查各官’ 칙서를 받들고 온 정사는 2명이었다. 『동문회고』는 정사 太子太保 議政大臣 哈世屯, 부사 太學士 額色黑 등 5명의 사신으로 기록하였으나, 『접칙고』는 哈世屯을 東正使, 額色黑을 西正使로 표기하였다. 『접칙고』에는 이때 소요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元銀 8,860兩이었다. 이듬해는 칙사 3회의 행차에 18,340냥이나 소요되었다.⁸⁰⁾

75)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1월 20일(갑오). 이들 품목 이외는 별도의 역관이 牛莊驛에서 전달하였다.

76) 『승정원일기』 숙종 14년 3월 7일(경진).

77)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9일(계사).

78)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5월 30일(병술).

79)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10월 24일.

강희 42년(1703. 숙종 29) 仁元王后 책봉 칙서를 받은 정사 예부시랑 揆敍, 부사 侍衛 兼 武備院事 噶爾圖는 대통관 2명, 차통관 2명, 跟役 18명이 수행하였다. 이때 원은 7,750냥이 소요되었다.

物種折銀三百二十七兩
 錢七萬二千二百四十六兩
 合折錢八萬八千四百兩

물품을 銀과 錢으로 바꾸었고, 그 액수가 錢으로 환산해서 88,400냥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⁸¹⁾ 칙사는 조선으로부터 지급받은 은으로 녹비·수달피·청서피 등의 피물을 사갔다. 정사와 부사에게 종이는 本色, 즉 현물로, 표피·鹿皮·水獺皮·靑黍皮 등은 은으로 지급하였다. 절은 현상으로 조선 시전 백성들은 평상시 가격의 1/1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물품을 매매하여 살길이 막막해졌다.⁸²⁾ 반면에 칙사는 휴대해 온 물품을 가격 이상으로 환산해서 매매하여 이익을 꾀하였다. 그들의 물품은 조악하였지만 조선의 시가로 환산하여 1/3에서 두 배나 더 받아갔다.⁸³⁾ 이처럼 칙사의 절은 폐단이 컸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조선의 고뇌가 있었다.

칙사가 행차한다고 미리 알리는 것을 勅奇라 한다. 칙기가 한번 떨어지면 여러 고을이 소란을 떨며 접대에 필요한 호피 등의 물품을 富民에게 분담시켰다. 부민을 監官으로 임명하여 사재를 내어 기일 전에 구입케 하였

80) 『접칙고』 순치14년 3월·4월·6월. 『동문휘고』(권9, 조칙록) 순치 14년 10월 26일)는 10월에 황태자 출생 조서를 반포하러 사신이 들어왔다고 기록하였다. 그 비용까지를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이다.

81) 『접칙고』 「仁元王后冊封勅」강희 42년 계미 6월. 전 72,246량

82)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3월 15일(병진).

83) 비싼 값에 팔려 하고 시민은 평가(平價)에 사려고 하여 서로 다투며 힐난하는 때에 한바탕 전쟁터가 될 정도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7년 3월 14일(경오).

다. 하지만 임명된 자는 뇌물을 바치고 빠져나가는 폐해가 극성을 이루었다.⁸⁴⁾

IV. 청조 通官에의 호피 · 표피 지급 및 求請

1. 청조의 통관 편성과 조선의 대우

청조는 會同四譯官에 朝鮮通事官 8인을 편성하였다. 6품 · 7품이 각각 2명, 8품이 4명이었다. 순치 원년(1644. 인조 22)에 會同館 · 四譯館의 二館으로 분리되었다. 회동관은 禮部에 예속되어 主客司主事 滿 · 漢 각 1인이, 사역관은 翰林院에 예속되어 太常寺 漢少卿 1인이 제독하였다. 이때 朝鮮通事官은 6인이었으나, 후에 10인을 증가시켜 총 16인으로 구성하였다. 6품이 10인, 7품이 6인이었다.⁸⁵⁾

칙사를 조선에 파견하는 경우 大通官 · 次通官 · 제독 · 跟役 · 筆貼式 등이 수종하였다. 승덕연간 이후 정사 혹은 사신 3 · 5명이 대동하는 常隨官은 특별한 명칭이 없었다. 대통관을 1등, 차통관을 2등, 근역을 3등으로 삼았다.⁸⁶⁾ 구범진은 청조가 조선에 파견했던 유일한 정식 관원이었던 通官 역시 漢人 출신이 배제되는 ‘滿缺’이었다고 서술하였다.⁸⁷⁾ 하지만 『接勅考』를 살펴보면, 승덕연간에는 ‘通事’ · ‘衙譯’로 표기하고 있고, 순치제 즉위 이

84) 호피는 방석으로 칙사나 통관의 방에 설치하였다. 통관에게는 堂排 때에만 호피 방석을 사용하고 房排에는 치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민심서』 禮典 6조, 제2조 「賓客」.

85) 『淸史稿』 권114, 職官志1 禮部 「會同四譯館」.

86) 『통문관지』 사대 하, 「勅使의 행차」.

87) 구범진, 앞의 논문, 9쪽 참조.

후는 大通官·次通官의 명칭이 등장하고 이 임무를 맡은 이들이 조선 출신 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물론 일부 만경도 보이지만 이를 전부 ‘滿缺’이라고 단정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조선은 칙사만이 아니라 대통관·提督·筆帖式에게도 예단을 지급하였다. 【표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통관에게 다양한 명목의 예단이 지급되었다. 특히 통관에게 密贈이라는 명목으로 예단이 지급되었다. 이는 천총 4년(1630, 인조 8)부터 시작되었고, 강희 20년(1681, 숙종 7)에 賞給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⁸⁸⁾ 이 외 節日에는 別給禮單이 있었고, 도구청은 禮單 외에 칙사와 대통관에게 은·명주·면포 등의 물품과 호피·표피를 하사하는 명색이었다.⁸⁹⁾ 대통관처에 지급하는 물품 수량이 칙사보다 더욱 많았다.⁹⁰⁾

【표 6】 통관에게 지급되는 예단 명목

<p>명목</p>	<p>別人情 密贈 都監贈給 節日禮單(정조·단오·동지) 別給禮單</p>	<p>中路禮單</p>
-----------	--	-------------

※ 전거: 『만기요람』 재용편 5, 支勅「贈給式」

88) 『만기요람』 재용편 5, 支勅「贈給式」. 迎接都監에 따르면 密贈은 숙종 6년(1680, 강희 19)에 시작된 것으로 張孝禮에게 1,000냥을, 尹孫에게는 700냥을 지급하였다. 장효례에게는 공로를 인정하여 400냥을 더 주었다. 지금은 주선한 일이 없어 例贈 1,000냥 외에 加給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숙종 8년 3월 17일(을축). 장효례는 100냥을 더 추가하였다.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2월 17일(무신). 김대현에게 1,500냥을, 100냥을 더 추가하여 지급하였다.

89) 『인조실록』 권47, 인조 24년 1월 10일(무오).

90)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11월 미상.

실제로 『頒赦勅遠接使別人情』 강희 18(숙종5. 1679)년의 ‘皇太子好經痘疾頒詔兼頒赦勅’ 사료를 보면, 칙사는 2명, 통관 4명이 조선에 들어왔다. 칙사는 一品侍衛 額眞 郎, 부사는 一等待衛 安이었고, 대통관은 金大憲 · 張孝禮, 次通官은 文金 · 崔太雲이었다.⁹¹⁾ 파견된 통관의 수는 적은 경우 2명, 많은 경우 9명이었다. 칙사에게는 別贈 · 例贈이, 次通官 崔太雲 · 文金の 別求請, 軍色大通官 贈給, 盤膳色 大通官 次通官 및 家丁의 贈給, 雜物色大通官贈給, 宴享色大通官贈給, 大通官二員 · 次通官二員 贈給, 次通官 文金 自戶曹別下, 次通官 崔太雲 求請 등의 명목이 존재하였다.

순치 11년(1654. 효종 5) 6품 通事官 郭尼 등에게 예물로 은 150냥, 표피 1장 등의 물품을, 8품 通事官 雲素尼에게는 은 50냥, 被褥 1副를 지급하였다.⁹²⁾ 강희 2년(1663. 현종 4)에 會同館印務員外郎 品級加一級 伊爾色尼가 조선에 파견할 때 跟役과 예물은 대통관보다 많지만 의례는 대통관과 동일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예부가 조사해보니 순치 13년(1656) 會同館印務⁹³⁾ 願爾馬渾郭尼는 4품 頂帶로 조선에 들어갔을 때 예부가 예물은 대통관 사례에 의해 수수하자는 안을 내자, 순치제는 수수하는 물품은 부사의 반으로 하라는 성지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 광니와 교체된 4품관 伊爾色尼가 조선에 들어가는 경우 조선으로부터 은 150냥, 표피 4장 등의 각종 예물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에 강희제는 이후 會同館 提督 印務가 조선에 가는 경우는 광니가 수수하는 예물과 跟役 사례를 영원히 준례로 삼으라고 명하였다.⁹⁴⁾ 문제는 『頒赦勅遠接使別人情』 등의 사료에 4

91) 『집칙고』 「皇太子經痘頒詔勅」 강희 18년 기미 2월 및 『동문회고』 권9, 「皇太子出痘平復詔」 강희 17년 12월 16일.

92) 『동문회고』 原編 권38, 粘單 「據咨開單輸送咨」 순치 11년 7월.

93) 순치 14년(1657) 員外郎品級通事 1인을 편성하여 會同館의 印을 담당케 하였으나 곧 폐지되었다. 『淸史稿』 권114, 직관지1 禮部 「會同四譯館」. 순치 12년(1655) 會同館 掌印官 1원을 설치하였다. 조선 통사 중에서 員外郎品級 補授하였고, 館務를 제독하였다. 강희 『大清會典』 禮部 34, 主客淸吏司二 朝貢二等 「會同館」.

품 통관이 표피 4명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통관을 증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강희 57년(1718. 숙종 44) 황태후가 죽자 강희제는 정사 日講官 起居注 僉事 阿克敦(악둔), 부사 鑾儀衛治儀 兼 佐領 張廷枚를 조선에 파견하여 부음을 알렸다. 이때 筆帖式 1명, 6품 통관 2명, 7품 통관 1명이 동행하였다.⁹⁵⁾ 6품·7품의 통관 3명이 동행한 것이다. 건륭 23년(1758. 영조 34)에 6품은 4인, 7품은 2인을 줄였고, 8품은 2인을 증가시켰다.⁹⁶⁾ 건륭 41년(1776. 정조 즉위년) 정사 散秩大臣 兼 鑲白旗漢軍副都統世襲雲騎尉世襲佐領加三級 覺羅萬復(福), 부사 經筵講官武英殿總裁內閣學士 兼 禮部侍郎署鑲藍旗蒙古副都統加一級 崇貴는 통관 5명과 함께 弔慰와 封典에 대한 칙서, 金川을討平한 조서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온 기록을 통해 건륭 말까지 통관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때 6품 대통관 烏林佈(우린부)·金福貴, 7품 통관 朴寶樹, 8품 통관 四格(시거)·伍十泰(우시타이)가 수종하였다.⁹⁷⁾ 총 4명의 통관이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 중 2명이 조선 출신이었다.

『청사고』에는 ‘후에 (통관을) 모두 줄였다’고 기록하였는데, 현재 정확히 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道光 13년(1833. 순조 33) 정사는 散秩大臣 信勇公 盛桂, 부사는 理藩院右侍郎 廂白旗蒙古副都統으로, 賽尙阿를 6품 통관 吉勒通·阿英祥, 7품 통관 安泰, 8품 통관 德萊福·森布定이 수종한 사실에서 청 말까지 통관은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道光 25년(1845. 헌종 11) 황제는 종전에는 조선에 파견하는 사신은 통관 5~6명을

94) 『동문회고』 原編 권38, 錫弊1 「禮部定例會同館印務餽遺咨」 康熙二年九月日.

95) 『승정원일기』 숙종 43년 12월 27일(정미). 『동문회고』는 통관 수를 3명, 『접칙고』는 대통관 2명, 차통관 2명 합계 4명으로 기록하여 차이가 난다.

96) 『淸史稿』 권114, 職官지1 禮部 「會同四譯館」.

97)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10월 27일(을축). 『접칙고』에는 대통관 성명은 같으나, 차통관은 寶樹와 冬陽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대동하였으나 조선은 중국 언어에 능통하다며 통관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통관들이 조선에서 강제로 물품을 요구하는 폐단을 인지하고는 이후는 통관을 1인으로 경감시키면서 이를 영원히 준수하라고 내각에 유시하였다.⁹⁸⁾ 최종적으로는 조선의 요청으로 통관은 2원으로 정해졌다.⁹⁹⁾ 실제로 『동문회고』(권9, 詔勅錄)의 도광 25년(1845)은 통관 1명을 제외하고, 그 이후 도광 29년(1849)부터 광서 7년(1881)까지는 통관 2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조선 출신 통관의 행태 및 求請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통관 중에는 滿缺만이 아니라 조선 출신이 임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7】은 『頒赦勅遠接使別人情』 기록에 근거하여 칙사를 수행한 조선 출신 대통관 · 통관을 시대별로 정리한 것이다.¹⁰⁰⁾

【표 7】 『頒赦勅遠接使別人情』에 보이는 조선 출신 통관

연대	성명	직위	비고
승덕8	(정명수) · 李論善	淸譯	대통관
강희1	李夢善 · 金德之	大通官	
	尹堅 · 申金	次通官	
강희2	李一善	提督加一級	『승정원일기』 현종 4년 10월 10일(갑진)
	張繼哲 · 金徵生(金德生)	대통관	
	鄭哲男 · 文金	차통관	

98) 『淸宣宗實錄』 권413, 道光 25년 정월 28일(庚寅).

99) 『淸宣宗實錄』 권425, 道光 26년 정월 18일(甲戌).

100) 『집적고』에는 조선 말까지 활약한 통관들의 성명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연대	성명	직위	비고
강희9	金巨軍·金德之	대통관	
	金命善·鄭哲男·金應善	차통관	『접칙고』: 김명선은 提督
강희16	金大憲·(金明善)	대통관	
	尹孫·姜善逸(姜善一)	차통관	
강희18	張孝禮·金大憲	대통관	
	崔太雲·文金	차통관	
강희19	金巨軍 尹孫	一大通官 대통관	金巨軍
	文奉先	차통관	(姜善一·金相拜)
강희23	金大憲 尹孫	대통관 二通官	
	金尙拜·崔太吉	차통관	
강희26	李一善 李承會(李承厚)	一大通官 二大通官	
강희28	文奉先·李大壽	차통관	(대통관:姜善一·崔太吉)

※()는 『接勅考』

【표 7】을 통해 일단 승덕 말부터 강희 중기까지 조선 출신이 청역·대통관·차통관으로 활약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¹⁰¹⁾ 명청교체기의 대표적인 역관 정명수의 경우는 통관으로 戶部主事를 겸임하였다. 그는 부사 혹은 三使·四使를 맡았다.¹⁰²⁾ 조선은 그에게 은 200냥을 주고는 고국을 위해 매사에 힘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⁰³⁾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101) 임경준은 의주 출신 新達禮(조선명: 金汝翎·金汝亮)가 청조에 피로되어 통사관을 거쳐 火器營總管을 지냈고, 그의 자손 常明이 내무부 총관을 지낸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냈다. 『淸朝宮廷における內務府旗人の存在形態-朝鮮旗人チャンミンとその一族を中心に-』, 『內陸アジア史研究』 33, 2018.

102) 『통문관지』 사대 하, 「칙사의 행차」 및 『동문회고』 권9, 「詔勅錄」 순치 원년 11월 三使로, 순치 2년 5월에는 四使의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때 3명의 칙사와 통관에게 호피 · 표피를 하사하였다. 칙사에게는 각각 은 1,000냥씩을, 정명수에게는 관례에 따라 은 700냥 외에 별도로 3,000냥을 하사하였다. 세자도 별도로 그에게 은 800냥을 주었다. 당시 대통관 한거원에게는 별도로 조정에서 은 200냥을, 세자는 100냥을, 차통관 李論善에게는 조정에서 은 100냥을, 세자는 50냥을, 衙譯 崔富貴 · 金德生에게 조정에서 은 50냥을, 세자는 30냥을 하사하였다.¹⁰⁴⁾ 칙사보다 조선 출신 통관들에게 더 많은 은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통관 한거원은 昌城 출신으로, 규정상으로는 칙사보다 적은 액수였으나, 조선의 외교를 주선하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다액의 은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약간 언급하였듯이, 칙사는 연회가 베풀어질 때마다 都求請 등의 명목으로 예단을 수령하였다.¹⁰⁵⁾ 도구청은 禮單 외에 칙사 외에도 대통관에게 은 · 명주 · 면포 등의 물품과 호피 · 표피를 하사하는 명목이었다. 이 외에도 別求請 · 別別求請의 名色이 있었으며 칙사나 대통관의 요청에 따라 증급하였기에 물품의 多寡와 有無는 해마다 동일하지 않았다.

『頒赦勅遠接使別人情』 사료에는 칙사와 대통관 · 차통관의 구청 · 도구청 · 별구청의 품목과 수량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표 8】은 별인정이나 도구청 · 별구청의 명목으로 대통관 · 차통관 · 3차통관 등에게 지급된 표피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¹⁰⁶⁾

103)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4월 13일(갑자).

104) 『인조실록』 권47, 인조 24년 1월 10일(무오).

105) 이승민은 “구청은 조선이 정기적으로 왜관으로 도항하는 대마도 年例送使에게 28가지 定品 · 定量の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려지는 回賜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으며, 외교의례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정의하였다. 이승민, 「조선 후기 대마도 求貨의 개념과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106) 사료 중에는 일부 ‘豹’와 ‘貂’를 오기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표 8】『頒赦勅遠接使別人情』에 보이는 통관의 표피 구청

연도	칙서내용	명목	수량
승덕8		別人情	3張
강희6	頒詔兩勅	大通官二員都求請	각 100장
강희18	皇太子好經痘疾頒詔兼頒赦勅	大通官張孝禮	각 60장
		金大憲都求請	
강희34	王妃冊封勅	大通官二員都求請	각 100장
옹정2	先皇帝配天頒詔勅	大通官二員別求請	각 50장
		次通官一員別求請	30장
		次通官二員別求請	각 50장
	皇后封典勅	二大通官別求請	2장
옹정9	宣懿王后吊勅	三大通官別求請	30令
		二次通官別求請	20令
옹정13	皇帝登極勅	大通官二員別求請	각 3장
건륭3	吊勅	通官五員	각 15장
건륭14	皇后定諡頒詔勅	二大通官別求請	5장
	皇太后尊崇頒詔勅	大通官三員都求請	각 100
건륭51	吊勅	大通官三員都求請	각 100

【표 8】에 보이듯이, 대통관과 차통관의 도구청이나 별구청 명목으로 표피를 적게는 3장부터 많게는 100장까지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보자. 첫째, 강희 18년(1679. 숙종 5)의 조선 출신 대통관 장효례와 김대헌의 표피 60장을 제외하면 대략 대통관에게 도구청 명목으로 표피 각 100장씩이 지급되었다. 둘째, 별구청 명목으로 옹정 연간까지 대통관에게 표피 각 30~50명, 차통관에게 표피 20~30명 정도가 지급되었다.

먼저 대통관에 대한 처우이다. 승덕 8년 대통관의 驢行 명목으로 은 300兩을, 入京 후 7차례의 연회는 인삼을 은으로 바꾸어 지급하였다. 旻 宴

각 10냥으로 총 70냥이었다. 이 외에 密贈 명목으로 은 400냥과 구청 명목으로 은 200냥을 지급하였다. 시기별로 대통관에 지급하는 은 액수에는 변동이 생겼다.¹⁰⁷⁾

승덕 8년 별인정으로 표피 3장을 지급한 이후 강희 5년(1666. 현종 7)까지 표피 구청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순치 11년(1654. 현종 5) 칙사에게 勅使都給禮單 명목으로 표피 10장을 하사한데 반해, 대통관에게는 常貂皮 60령을 지급하였다는 사료를 찾아냈다. 표피가 아니라 초피였다는 점으로, 강희 원년에도 大通官 李夢善 · 金德之의 別求請 명목으로 각각 초피 50장이 지급되었다.

『頒赦勅遠接使別人情』에는 강희 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관에게 표피가 하사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해 親政頒詔勅을 받들고 정사 理藩院 左侍郎 綽克托, 부사 郎中 伍를 대통관 2명이 수종하였다. 대통관 金德之 · 金德生, 차통관 申金 · 金連立이었다.¹⁰⁸⁾ 도구청 명목으로 대통관 2명에게만 각각 표피 100장씩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듬해 대통관 이몽선은 은밀히 표피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가 淸山府에 표피 100송을 요구하자, 평산과 용강에서 내밀히 물품을 증여하였다.¹⁰⁹⁾ 이는 이전에 없던 일이었다. 현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평안도로 하여금 각 站에 엄히 신칙하여 밀증의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강희 18년(1679. 숙종 5)에는 대통관 장효례와 김대헌에게 표피 각 60장씩을 주었다. 당시 칙사 2원이 표피 각 10장의 도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우대 조치였다. 대통관 김대헌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전보다 100냥이 증가한 은 1,600냥을 하사받기도 했다.¹¹⁰⁾ 옹정 2년(1724. 경종 4)

107) 『頒赦勅遠接使別人情』 승덕 8년.

108) 『접직고』 6년 정미 9월.

109) 『비변사등록』 현종 9년 2월 및 『승정원일기』 현종 9년 2월 6일(을해).

110)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2월 17일(무신).

강희제 配天 칙서의 대통관은 朴得仁·楊七十八, 차통관은 吳玉柱·孫大黑이었다. 대통관 2명에게 도구청 명목으로는 표피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별구청 명목으로 표피 각 50장씩, 차통관 1명에게 별구청으로 표피 30장, 차통관 2명에게 별구청으로 각각 표피 50장을 지급하였다. 당시 박득인의 말에 따르면 칙사의 都求請에 본래 貂皮가 있었다고 하자, 조선 역관들은 이전 別求請 중에 초피가 있었으나, 都求請에는 본래 貂皮가 없다고 답변하였다.¹¹¹⁾ 칙사의 구청 물품 중에 표피와 더불어 초피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수량도 많다는 사실이다.

건륭제가 즉위하자 정사와 부사의 儀物의 반을 영원히 줄이라는 칙서를 반포하여 표피는 종전의 10장에 5장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통관들은 도구청·별구청의 명목으로 다량의 표피를 획득하고 있었다. 건륭 14년 칙사는 豹皮 5장이었던 반해 大通官 3명의 都求請으로 각각 100장씩 합계 300장이나 지급되었고, 건륭 41년에도 같은 액수의 표피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관들을 통해 다량의 표피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다.

다음은 조선 출신이 會同館 提督의 신분으로 들어온 경우의 처우문제이다. 李一善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순치 5년에는 衙譯, 순치 6년에는 次通官, 순치 8년에는 대통관, 순치 16년에는 제독이 되었다.¹¹²⁾ 예부는 그의 예단을 부사 액수의 절반으로 정하였다.¹¹³⁾ 한 번은 대통관 이일선과 이엇석이 西宴廳에서 平市署 관원을 불러들여 화물 發賣를 독촉한 적이 있었다. 이엇석은 별도로 牛黃二部, 倭長劍 一柄을, 이일선은 貂皮耳掩, 倭長劍一柄, 常貂皮 30령 등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이들이 칙사 일행에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다, 발매할 때에 그의 환심을 잃으면 주선에 방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¹¹⁴⁾ 게다가 조

111) 『승정원일기』 경종 3년 5월 4일(임오).

112) 『동문휘고』 권9, 「조직록」 순치 15년 2월 19일 및 순치 16년 9월 20일.

113) 『통문관지』 사대 하, 「칙사의 행차」.

선의 비밀스런 내부 상황까지도 숙지하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

이일선은 강희 원년(1662. 현종 3)·2년 연속으로 加一級提督 자격으로 조선에 들어왔다.¹¹⁵⁾ 『잡척고』에서 사신의 순서를 상사·부사 다음의 제독으로 기록한 사실에서 그의 위치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가 鳳凰城에 이르자 칙사로 차처하였다. 한거원이 칙사로 왔을 때의 사례에 준해 자신을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예부의 자문을 내보였다. 원점사 許積은 이전의 한거원이 칙사라고 칭하였지만 황제의 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조선이 속임을 당하였다고 여겼다. 잘못된 전례를 답습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제안하였다.¹¹⁶⁾ 하지만 예조는 회동관 제독에 加一級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대통관에 비해 더 우대하자고 제안하였고, 政院에서도 일단 칙사로 대접하자는 의견을 냈다.¹¹⁷⁾ 의주부윤도 조정에 이일선이 칙사의 자격으로 나왔다면 각 站에서는 칙사의 예로 접대할 것을 아뢰었다.¹¹⁸⁾ 반면에 이들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은 원점사는 제독은 대통관과 같은 자리에 앉히지만 접대나 예단은 대통관보다는 다소 차별을 두자고 건의하였다.¹¹⁹⁾

조선에 들어온 제독 이일선은 황제와 논의하여 정한 물품이라며 은 150냥, 표피 4령 등을 요구하였다.¹²⁰⁾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입에

114) 『승정원일기』 효종 3년 6월 19일(기미).

115) 『승정원일기』 현종 4년 10월 10일(갑진). 이해 9월 「查審犯賈疏黃勅一道」를 가지고 上使 刑部侍郎 勒得洪, 副使 郎中 海喇孫과 함께 提督 李一善이 通官 4명과 함께 조선에 들어왔다. 『동문회고』 補編 권9, 詔勅錄 강희 2년(1663년. 현종 4) 청에서 조선에 보낸 조칙 목록.

116) 『현종개수실록』 권9, 현종 4년 10월 23일(정사).

117) 『승정원일기』 173책 (탈초본 9책) 현종 3년 4월 12일 을묘 및 현종 3년 1662년 04월12일(을)

118) 『승정원일기』 현종 4년 10월 21일(을묘).

119) 『승정원일기』 현종 4년 10월 23일(정사).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인평대군이 은 200냥을 지급하였고¹²¹⁾, 현종은 평안감사로 하여금 이일선·金巨軍 등이 무역한 皮物을 수송시켰다.¹²²⁾ 당시 貂皮 100領을 더 지급하였다.¹²³⁾

이일선은 요동 松站에서 염초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건과 병자호란 때 심양으로 끌려갔던 조선인이 도망쳐 온 사건을 조사 심문하였다. 조선 조정은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할 목적으로 은밀히 그에게 5,000냥을 건넸다.¹²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달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다, 강희제로부터의 질책을 회피하려는 방책이었다. 강희 9년(1670. 현종 11) 이일선은 加二級이 되었으나, 여전히 조정과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칙사와 통관 등이 청구하는 물건이 끝이 없어 그들이 거쳐 간 州·郡은 피폐하였다.¹²⁵⁾ 통관 정명수 이후 그들의 요구는 끝을 모를 정도로, 통관에게 지급하는 물품이나 액수가 칙사의 몇 갑절에 이르렀다.¹²⁶⁾ 伴送使 吳挺一은 칙사가 한양으로 들어올 때 각 고을에 요구한 물품 수량이 이전보다 몇 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송사가 평안감사와 주선하여 감액시켰으나 그 수량도 상당하였다.¹²⁷⁾ 제독 이일선의 從胡들 요구는 이

120) 『승정원일기』 효종 8년 4월 2일(갑술).

121) 『승정원일기』 효종 8년 4월 5일(정축).

122) 『현종실록』 권17, 현종 10년 7월 23일(갑인). 『접척고』 강희 2년 2월의 「皇太后傳訃勅」의 대통관이 김거군, 동년 11월의 「盜買硫黃查勅」의 提督加一級이 이일선이었다.

123) 『현종개수실록』 권15, 현종 7년 7월 3일(임오).

124) 『현종실록』 권12, 현종 7년 7월 10일(기축). 대통관 김삼달은 1,800냥, 김거군은 2,000냥을 지급하였다.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의주에서 2,000냥, 평안감사가 5,000냥을 지급하였다.

125) 『현종실록』 권11, 현종 6년 12월 6일(정사).

126) 『비변사등록』 영조 즉위년 10월 24일. 호조판서 吳命恒은 통관과 절충하여 액수를 책정하였기에 칙사 1명에게 가장 많이 지급한 때에도 4,000냥을 넘지 않아 이전과 비교하면 반이 줄어들었다고 자신의 공적을 드러냈다.

127) 『비변사등록』 현종 9년 2월.

전보다 몇 배나 더했다. 거론하기도 어려운 각종 물품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물품을 마련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피폐한 백성을 구제할 목적으로 개성에 있는 海西의 皮穀 1,000석을 민간에 나누어 주었을 정도였다.¹²⁸⁾ 영조가 즉위한 해에 조선은 疫疾과 흉년이 발생하였다. 그런 와중에 칙사들이 연이어 들어왔다. 그들을 대접하는 支供 비용은 한도가 없어 황해도 · 평안도 백성은 심한 고통을 겪었다. 관서의 勅需는 한 번에 1만여 냥, 적어도 7·8,000냥이나 소요되었다.

잘 알다시피 청조는 조선의 歲幣 및 방물 진헌 면제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하였다. 강희 50년(1711. 숙종 37) 조선의 기근을 이유로 紅豹皮 142장의 전면, 이어 건륭제의 칙사의 표피 반감 조치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통관들의 표피 구청은 끊임없이 분출되었다. 도구청 · 별구청은 예단 외에 지급 받는 물품이었다. 대마도처럼 28개 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물품의 종류나 수량의 다과도 달랐다. 조선은 조선출신 통관 · 제독이 조선과 청조 사이에 개재된 다양한 외교 현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V. 청 종실 · 칙사 · 통관의 무역 요구

청조의 칙사가 조선에 파견되면 大通官 · 次通官 · 提督 · 筆貼式 외에 跟役 · 家丁¹²⁹⁾ 등이 따라 들어왔다. 이들은 휴대해 온 물건들을 매매하면서

128) 『현종실록』 권7, 현종 4년 12월 18일(신해).

민간이나 조정으로부터 그 가격을 강제로 받아냈다.¹³⁰⁾ 그들만의 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瀋陽의 종실들도 무역을 원했다. 인조는 八王, 즉 태조 누르하치의 제12자인 和碩英親王 阿濟格(아지거)이 조선과의 변경에 도착했을 때 당상문관 1원을 문안사로 칭하여 예단을 보냈다.¹³¹⁾ 그에게 많은 조선인이 억류되어 있어, 그를 통해 贖還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¹³²⁾ 인평대군은 그에 대한 回禮品으로 표피를 마련하였다.¹³³⁾ 팔왕은 은밀히 은 500냥을 조선에 보내 그 중 200냥은 표피·수달피 등을, 300냥은 목면 무역을 시도하였다. 조선은 이들 물품 준비에 곤란함을 내비추자, 그는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피력할 정도였다.¹³⁴⁾ 물품 무역 욕구가 강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조선은 구왕 도르곤에게 문안사를 파견하여 예단을 바쳤다.¹³⁵⁾ 순치제의 북경 입성과 즉위식 거행 이후 도르곤은 섭정왕으로 칭해졌다. 조선은 歲貢 외에 획득한 倭刀 등의 물품을 바쳤고, 섭정왕 도르곤·鄭親王 濟爾哈朗(지르갈랑) 및 諸王·大臣에게 예물을 바쳤다. 특히 도르곤에게는 다른 왕보다 후하게 보냈다. 순치제가 등극하자 외국에서 諸王·貝勒에게 보내는 예물은 영원히 금지시키는 조치를 법령으로 정하였다.¹³⁶⁾ 순치

129) 한양에 들어오거나 灣上에 오면 家丁에게 예단을 지급하였다. 그 숫자도 많았다. 『비변사등록』 인조 20년 10월 24일. 이때의 가정 숫자는 80여 명이었다. 수행하는 家丁 5명은 2등 두목의 예로, 통사 1명은 칙사의 3등 두목의 예로 증급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9월 22일(병자). 정명수는 두목이 명조의 家丁에 비할 바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는 두목이 황제와 帝王家의 사람이라고 했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8일(임진).

130) 『통문관지』 사대 하, 「칙사의 행차」.

131)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3월 29일(무진). 『칙사등록』 동일 조.

132)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3월 30일(기사).

133)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6월 25일(신해).

134) 『瀋陽狀啓』 「勅草謄書」己卯年(인조 17. 1639) 8月23日 및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9월 12일(병인).

135)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3월 19일(무오).

4년(1647. 인조 25) 인평 대군이 사은사로 임명되자, 칙사 정명수는 청조는 문서에 구왕, 즉 皇叔父 攝政王으로 칭하고 있으니, 대군과 대신을 논할 것 없이 모든 사은 행차는 반드시 실제인 섭정왕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을 恒式으로 정하고, 인평대군이 북경에 들어올 때 諸王에게 바치는 예단은 전례에 따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¹³⁷⁾ 정명수는 섭정왕에 대한 사은사의 예물로, 순치 2년(1645. 인조 23)의 帛祭 후 사례한 예물 단자의 예를 恒式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자 인조는 이를 승락하였다.¹³⁸⁾ 이에 조선은 표피 2령을 더 마련하였으나¹³⁹⁾, 섭정왕은 예물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후 사은사가 예물을 준비할지의 여부로 망설이자 정명수는 더 이상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했다.¹⁴⁰⁾ 필시 순치제가 등극하면서 제정한 법령, 즉 조선과의 私交 불허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청조에서의 권위와 위세가 남달랐던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인조는 도르곤의 예단으로 표피 4장을¹⁴¹⁾, 효종은 표피 5장을 바쳤다.¹⁴²⁾ 순치 7년(1650. 효종 1) 청 예부는 '帛祭와 冊封' 시 각각 사은하는 방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賜祭 때 도르곤에게 사은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사은사 李瑛을 질책하였다. 호부 상서 巴訖乃是 섭정왕 도르곤의 “조선이 청하는 일에 대해 들어준 것이 많은데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불경스런 일이 있으니 이는 도리가 아니다”는 말을 전하였다.¹⁴³⁾ 당시 도르곤은 조선과 관련된 외교 문제

136) 『淸世祖實錄』 권3, 순치 원년 정월 1일.

137) 『비변사등록』 「勅使 鄭命壽가 언급한 別單의 내용과 攝政王에게 果物을 보내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인조 25년 3월 2일.

138) 『인조실록』 권48, 인조 25년 3월 2일(계묘).

139)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3월 12일(계축).

140)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10월 14일(신사).

141) 『동문회고』 原編 권18, 節使1 「攝政王에게 보내는 方物單」 순치 4년 4월 13일.

142) 『동문회고』 원편 권5, 哀禮1 「謝攝政王禮物單」.

143)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2월 8일(신묘).

를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에게 후한 예물을 보냈던 것이다.

심양의 8旗들도 從胡를 조선에 보내 무역을 획책하였다. 승덕 초 역관 정명수는 八高山, 즉 八旗가 무역을 희망하는 표피·수달피·청서피·壯白紙 등의 물품 목록을 都監에 전달하였다. 당시 표피는 한양과 지방 모두 고갈되어 난처한 상황이라 호조는 평시서 관원으로 하여금 시장 백성들이 물건 값을 흥정하는 것을 살피게 하였다.¹⁴⁴⁾ 정명수는 역관을 불러 매매할 표피·黍皮·궁각·丹木·淸蜜·白紙·호초·목면·彩色 등의 물품 목록을 내보이고는 銀 800냥을 건넸다.¹⁴⁵⁾ 호조는 표피를 구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사단이 생길 것을 몹시 우려하였다. 간신히 中品·下品 22장을 마련하였다.¹⁴⁶⁾

척사들도 공·사예단에 만족하지 않고 무역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하사받은 예단을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무역해 주기를 요청하였다.¹⁴⁷⁾ 인조가 증급한 弓子·長箭·幟箭을 호조에 보내 紙地·靑黍皮 등의 물품을 구매하였다.¹⁴⁸⁾ 정명수는 매매할 물품 중에서 녹비 100장, 청서피 200장, 수달피 120장, 黑角 60桶을 西宴廳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사와 정명수는 이 중 녹비 68장, 청서피 2장, 수달피 90장을 선별하여 호조 낭청에게 무두질하고 색을 입혀 다시 바치라고 요구하였다.¹⁴⁹⁾ 당시 호조가 외방에 분정한 물품 중 표피·녹비·수달피는 도성의 저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지방의 백성이 세페로 반드시 바쳐야 하는 물품으로 여겼을 정도였다.¹⁵⁰⁾

144)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6월 27일(계축).

145)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1월 27일(경진).

146)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2월 4일(병술).

147) 『승정원일기』 효종 1년 5월 17일(기사).

14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26일(경신).

149)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3월 4일(을사).

순치 7년(1650. 효종 1) 호부상서 巴訖乃(巴哈乃·바하나)와 홍문원 대학사 祈靑古(祈充格·키충거)·정명수가 칙사로 조선에 들어왔다.¹⁵¹⁾ 기칭고는 弘文院大學士 祈充格이다. 그는 滿洲鑲白旗 출신으로 도르곤에 예속된 인물이었다.¹⁵²⁾ 대통관 韓甫龍은 칙사가 도르곤 家內的 親近한 사람으로 귀국 후 아랫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며, 국왕이 하사하는 예단을 종이와 皮物로 바꾸어 무역해줄 것을 요구하였다.¹⁵³⁾ 도르곤은 칙사 일행이 조선의 토산품을 무역하고자 해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성의와 신의가 없는 것이라며 심하게 질책하였다.¹⁵⁴⁾ 청 조정의 용인 하에 칙사의 무역이 강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년 뒤 대통관 李齡石은 戶曹色吏에게 칙사의 皮物 發賣 건을 호조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칙사는 差備譯官을 보내 전년의 칙사가 피물과 잡물을 발매한 사실을 들어 무역 물품을 가감할 수 없으며 숫자대로 무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은 모피의 결핍을 하소연하였다. 연속해서 흉년을 당해 백성들의 삶이 힘든 형국이었다.¹⁵⁵⁾ 칙사는 赤狐皮 등 五色皮物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들 물품은 저자에 전무한 물품이라 역관을 통해 난처한 사정을 피력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은 平市署 官員을 질책하였다. 어쩔 수 없이 水獺皮 200여 장, 청서피 300여 장을 먼저 납부시켰다. 이외에도 이들 가죽을 더 요구하였는데, 이전보다 4,5배나 더 많은 수량이었

150)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월 7일(을축).

151)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2월 8일(신묘). 이 해 정월 大學士 祈充格 등을 조선에 파견하여 인조의 謚祭에 대한 조선의 사인과 謝獻 의례가 결핍되었다고 질책하였다. 도르곤은 조선의 여자를 선발토록 지시하였다. 『淸世祖實錄』 권47, 순치 7년 정월 28일(임오).

152) 『淸史稿』 권245, 「祈充格列傳」.

153) 『승정원일기』 효종 1년 5월 17일(기사).

154)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2월 8일(신묘).

155) 『승정원일기』 효종 3년 6월 14일(갑인) 및 『비변사등록』 효종 3년 6월 14일. 「勅使의 皮物 發賣 문제에 대한 備邊司의 啓」.

다.¹⁵⁶⁾

인조는 병자호란 후 조선에 징병을 요구하러 들어오는 칙사의 支供 및 예단을 성대하게 마련하였다. 칙사가 毛裘를 요구하자, 山獺 가죽을 무역하여 모피 이불을 만들어주었다.¹⁵⁷⁾ 영접도감이 표피 46장을 발매하는 와중에 칙사는 은 70여 냥을 내놓고는 표피·수달피 등의 물품을 바치라고 독촉하였다. 시민들이 이들 물품을 사방에서 구입하려고 했으나 손에 넣지 못하였다. 당시 표피 상품은 折銀 5냥, 중품은 절은 4냥이었다.¹⁵⁸⁾ 市民이 수달피·청서피·녹비·白紙 등의 물품을 대통관에 보이자 그는 西宴廳에서 수달피 330장 중에서 21장만 상품으로 선정하였다. 중품과 하품은 가격을 정하지 않고 관소에 남겨두게 하였다. 그리고는 시민들에게 수달피를 구해 올 것을 재촉하였다.¹⁵⁹⁾ 그들은 皮物 수량을 넉넉하게 바치라고 성화였다. 문제는 각 道에서 상납하는 표피는 값이 지나치게 비싸 백성이 이를 마련하는데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다.¹⁶⁰⁾

순치 7년(1650. 효종 1) 12월 실력자 도르곤이 급사하자 순치제는 그를 成宗 義皇帝로 추존하였지만, 곧 모반죄로 처벌하였다. 이렇게 사건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하에서 칙사와 정명수가 도르곤 모친과 황후 추존건¹⁶¹⁾, 그리고 도르곤 모반 조서를 받들고 연이어 조선에 들어왔다. 정명수는 별예단을 요구하였다. 본래 元禮單 및 別贈 물품은 이전에는 도르곤

156) 『승정원일기』 효종 3년 6월 18일(무오). 李一善은 별도로 貂皮耳掩·常貂皮 30領을 요구하였다. 『승정원일기』 효종 3년 6월 19일(기미).

157)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4일(무자).

15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7일(신묘). 전후로 발매하기 위하여 내준 價銀은 660여 냥이었다.

159)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1월 24일(계미). 발매한 뒤로 2·3일 동안 그들이 고른 것은 수달피 744장, 청서피 762장, 녹비 44장이었다.

160) 『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10월 23일(신유).

161) 『동문휘고』 원편 進賀1, 庚寅「頒追尊攝政王母皇后祔廟詔」순치 7년 7월 日.

에게 품의하여 결정하였다. 그의 지시가 없으면 한 장의 종이도 마음대로 수수할 수 없었다.¹⁶²⁾ 정명수는 순치제가 별예단의 1분은 칙사들이 사용하고, 2분은 公家에 둘 것이라는 지시를 조선에 전달하였다.¹⁶³⁾ 효종은 別贈과 發賣에 관한 일을 정명수에게 주선시켰다. 칙사는 표피·수달피의 무역을 요구하였지만 이들 물품은 탕갈되어 여분이 없었고, 표피·수달피는 예단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은 요구 수량을 맞추기가 어려웠다.¹⁶⁴⁾ 칙사의 별예단 지급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¹⁶⁵⁾ 한편 豹皮·赤狐皮·山獺皮·土豬皮 등 4종류의 물품은 1장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다. 발매하는 수량이 너무 많아 市民들이 조치할 수 없자 조선출신 역관 李馨長으로 하여금 주선케 하였다. 그 결과 표피 등 4종류의 피물은 그들의 요구를 끝내 막았지만 靑黍皮·水獺皮·鹿皮 등의 피물은 매매를 허락하였다.¹⁶⁶⁾ 표피 등 네 종류의 皮物은 근래에 들어 씨가 마른 품종이었다. 대통관 등은 西宴廳에서 平市署의 下人을 불러들여 水獺皮·靑黍皮 등 피물의 납입을 재촉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2,000장을 채우면 가격을 쳐주겠다고 했다. 이렇듯이 칙사들의 금전이나 물품 요구 폐해는 날로 심해졌다. 도성의 시민들이 지탱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효종 초에는 더욱 극심하였다. 칙사는 황제의 분부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응하지니 물력이 부족하였다. 민력은 감당할 수 없고 국력을 보존할 수 없다는 뜻을 역관 정명수에게 알리자는 방안이 나왔다.¹⁶⁷⁾ 칙사가 교역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상은 강제로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였던 것이었다.¹⁶⁸⁾

162) 『승정원일기』 효종 1년 3월 29일(임오).

163) 『승정원일기』 효종 2년 2월 18일(을축) 및 3월 8일(을유).

164) 『승정원일기』 효종 2년 3월 6일(계미).

165) 『승정원일기』 효종 2년 3월 8일(을유). 별예단은 전년 6명의 칙사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승정원일기』 효종 1년 2월 8일(신묘).

166) 『승정원일기』 효종 2년 10월 26일(경오).

167) 『승정원일기』 효종 2년 10월 23일(정묘).

순치제는 칙사와 수종원들이 무역을 행할 때 소란스럽다며 사신은 단지 정사·부사 각 1원만을 임용하며, 그 자격 조건도 예의에 익숙하고 조심하는 자로 제한시켰다. 아울러 팔기의 사신 수행과 무역 행위를 모두 중지시켰다.¹⁶⁹⁾ 하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강희 말 상사와 부사가 별도로 표피 100령의 무역을 요구하였다.¹⁷⁰⁾ 옹정제가 죽자 訃勅을 받든 상사·부사가 구정한 표피·수달피·초피 등 각종 물품을, 통관 이하에게 지급하는 각종 물품도 경감하여 入給시켰고, 별도로 구정하는 물품도 편의에 따라 응했다.¹⁷¹⁾

일찍이 흥타이지는 조선과 화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호간의 교역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교역의 필요성을 貝勒과 유력자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은 歲貢 외에 倭刀 등의 물품을 바쳤고, 섭정 왕 도르곤·鄭親王 濟爾哈朗 및 諸王·大臣에게 예물을 바쳤다. 특히 도르곤에게는 다른 왕보다 후하게 마련하여 보냈다. 순치제가 등극하자 외국에서 諸王·貝勒에게 보내는 예물은 영원히 금지시키는 조치를 법령으로 정하였다.¹⁷²⁾ 이 조치가 발표되자 필요한 물품의 확보를 위해 칙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다양한 물품의 무역거래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피는 고위 관료들의 坐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북경 사람들이 진귀품으로 간주하였기에 강력하게 무역을 요구했던 것이다. 조선인들도 표피를 휴대하고 북경에 가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다.¹⁷³⁾

168) 『효종실록』 권4, 효종 1년 5월 25일(정축). 호조에서 보상해 준 액수가 거의 수천냥에 달했다.

169) 『통문관지』 사대 하, 「칙사의 행차」. 상사는 내각학사였고 부사는 무신이었는데, 경종 3년 상사는 종실이고, 부사가 내각학사였다. 『비변사등록』 경종 3년 11월 2일. 우의정 李光佐 등이 입시하여 勅使를 극진히 접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170) 『승정원일기』 숙종 44년 1월 7일(병진).

171)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1월 16일(기사).

172) 『淸世祖實錄』 권3, 순치 원년 정월 1일.

VI. 맺음말

조선은 후금 조정에 公禮單을 바치는 외에도 胡差(혹은 金差)에게 별도의 私禮單을 지급하였다. 일찍이 명조 사신에게도 별도의 예단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후금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예단을 강제하였던 것이다.

청조 성립 이후 칙사 편성은 정사·부사 각 1명, 通官 수 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북경으로 되돌아가는 날까지 수차례의 연회가 베풀어졌고 그 때마다 조선 조정은 예단을 지급하였다. 즉, 원접사의 증로문안, 入京 다음날의 下馬宴을 시작으로 回程日의 餞宴까지 다양한 연회가 열렸다. 그때마다 例贈·別贈·都給·都求請·密贖 등의 명목으로 예단을 지급하였다. 조선은 이들 칙사에게는 地銀(즉, 九成銀)·종이·부채·환약·皮物·명주·담뱃대 등을 贈給하였다. 그 밖에 別求請·別別求請의 명색이 있었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증급하였기에 물품의 多寡와 有無는 해마다 동일하지 않았다.

특히 호피보다는 표피가 예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호피는 원접사나 관반·교외전연의 예단으로 상사·부사에 각각 1장씩 지급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경감되었다. 청조가 성립한 이듬해 정사·부사에게 각각 호피 6장, 표피 29장이었던 것이, 흥타이지가 죽고 순치제가 등극하자 호피 1장, 표피 14장이 경감되어 호피 5장, 표피 15장이 되었다. 황제의 등극을 자축하는 동시에 조선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선정을 베푸다는 의식의 발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칙사 2명에게 中路問安中使 禮單으로 표피 각 1장씩, 칙사 이하 都給禮單으로 정사·부사 각각 10장씩, 회환 시 中路問安中使 예

173) 김경선, 『연원직지』 권6, 留館別錄 「복식」.

단으로 표피 각 1장씩이 지급되었다.

칙사의 예단 사여에 있어 折銀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사·부사의 銀과 종이 등은 本色 즉 현물로, 표피·鹿皮·水獺皮·靑黍皮 등은 折銀하였다. 折銀이나 折錢 현상은 칙사들이 중국에서 마련해 온 물품 이상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이익을 좇으려 한 데서 기인하였다. 그들은 公·私禮單에 만족하지 않고 무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예단을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무역해 주기를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조는 칙사를 파견하는 경우 大通官·次通官·提督 등을 수종시켰다. 이들 통관·제독에게도 다양한 명목으로 물품이 지급되었다. 특별히 통관처에는 密贈과 節日의 별급예단을 지급하였는데, 大通官處에 지급하는 물품이 칙사에 지급하는 수보다 대단히 많았다. 인조는 통관에게 은·명주·면포 등의 물품 외에 호피·표피도 하사하였다. 강희제의 세폐로 바치는 紅豹皮의 全免, 건륭제의 칙사에게 공예단으로 지급하는 표피의 半減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에서 통관들은 都求請·別求請 명목으로 다량의 표피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칙사를 수행한 통관들이 조선 출신이라는 점이다. 조선은 이들이 일행에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다, 물품을 發賣할 때에 그의 환심을 잃으면 주선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후금 초에는 심양의 황실들에게 예단을 바쳤다. 인조는 八王, 즉 태조 누르하치의 제12자인 和碩英親王 阿濟格이 조선과의 변경에 도착했을 때 당상문관 1원을 문안사로 칭하여 예단을 보냈다. 그에게 많은 조선인이 억류되어 있어, 그를 통해 贖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황실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순치제를 응립한 누르하치의 제14자인 九王 도르곤[多爾袞]에게 문안사를 파견하여 예단을 바쳤다. 그가 조선과 관련된 일을 전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예단으로 만족하지 않고 從胡를 조선에 보내 무역을 획책하였다. 조선출신 통관 정명수는 이들이 손에 넣고자 했던 표피 · 수달피 · 청서피 · 壯白紙 등의 물품을 都監에 전달하여 마련하고자 했다. 칙사 이하 통관 · 제독, 나아가 심양의 황실과 팔기가 표피를 무역하려던 이유는 북경 사람들이 이들 물품을 진귀하게 여겨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다양한 물품 중에서 호피와 표피는 선물용만이 아니라 고위 신분을 상징하는 좌욕이나 관복에 사용되어 그 가치가 컸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조선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칙사나 통관이 요구하는 물품이 끝이 없어 이들이 거쳐 간 州 · 郡은 피폐할 정도였다.

(2020.12.15. 투고 / 2020.12.21. 심사완료 / 2020.12.24. 게재확정)

[Abstract]

Tiger and Leopard Furs of Joseon(朝鮮) as Imperial Gifts and Trade Goods for Qing(淸) Dynasty's Royal Messengers and Interpreters

Seo, In-beom

Joseon used to give private offerings which were not considered as official tribute to The Later Jin(後金)'s royal messengers. That was such a common custom since Ming(明)'s royal messengers visited Joseon, so The Later Jin's messengers forced Joseon to do the same because they already had known about the custom. After Qing dynasty established, royal messengers, who deliver the emperor's royal orrespondences, were consisted of one senior and junior messenger each, and several numbers of interpreters. When the messengers stayed in Joseon, they enjoyed banquets and the government gave offerings to them.

In that period, leopard furs were preferred than tiger furs. During the early period of Qing dynasty's establishment, six tiger furs and 29 leopard furs were given to each of senior and junior messengers. When Hong Taiji emperor(崇德帝) passed away and Shunzi emperor(順治帝) got the throne, the number of fur offerings had been decreased as to five tiger furs and 15 leopard furs. The reasons of decline of fur numbers seemed like because of a celebration for the throne and to show the emperor's kindness for people of Joseon Years after, however, each of the two royal messengers still got one leopard fur, and the other groups of messengers got tens of leopard furs.

Numerous people of Qing dynasty such as interpreters, generals and even royal families of Shenyang(瀋陽) wanted to trade leopard furs because people of Beijing(北京) thought the furs are very precious and luxurious ones. Tiger and leopard furs were good for gifts, and those were symbolic items like sitting mats and luxurious hats that could show aristocratic authorities to other people. But Joseon was in a horrific situation because the messengers' heavy demand for furs made people of Joseon in deep suffer, and even some Joseon villages fell into disrepair.

□ Keyword

Qing Dynasty(清), Tiger Furs(虎皮), Leopard Furs(豹皮), Royal Messengers(勅使), Interpreters(通官)

[참고문헌]

1. 사료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효종실록』, 『현종실록』,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 『정조실록』

『동문휘고』

『만기요람』

『北征錄』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瀋陽狀啓』

『연원직지』

『일성록』

『接勅考』

『칙사등록』

『통문관지』

『頒赦勅遠接使別人情』(奎 1312-v.1-8)

平安監營(朝鮮) 編, 『平安道內各邑支勅定例』(奎17197)

黃海監營(朝鮮) 編, 『海西支勅定例』(奎16041)

『清史稿』

『清太宗實錄』, 『清世祖實錄』, 『清宣宗實錄』

강희 『大清會典』, 가경 『大清會典事例』, 官修 『大清會典則例』

2. 저서

구범진, 『병자호란, 흥타이지의 전쟁』, 까치, 2019.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3. 논문

- 구범진, 「淸의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인문논총』 59, 2008.
-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30, 2004.
- 김선민, 「조선통사 굴마훈, 淸譯 鄭命壽」, 『명청사연구』 41, 2014.
- 白玉敬, 「仁祖朝 淸의 譯官 鄭命守」, 『研究論叢』 2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 서인범, 「조선 호피 · 표피의 淸朝 진헌」, 『역사학보』 244, 2019.
- 이명제, 『17세기 청 · 조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1. 2.
- 임경준, 「淸朝宮廷における内務府旗人の存在形態-朝鮮旗人チャンミンとその一族を中心に-」, 『内陸アジア史研究』 33, 2018.
- 최진규, 「청의 중국 지배와 필척식」, 『중국사연구』 46, 2007.

